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제안이유

불법드론 무력화 등 공공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전파차단을 허용할 수 있도록 전파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파차단장치 도입·폐기 신고 및 제조·수입·판매 인가절차 등을 마련하고, 전자파 강도 보고기한에 휴일을 포함하지 않도록 하며, 불가피한 경우 보고 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공안전을 위한 전파차단장치 신고 및 인가 규정 신설(안 제53조, 제123조제1항제1의8호·제2항제7의2호 신설)

불법드론 무력화 등 공공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전파차단을 허용할 수 있도록 전파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위해 전파차단장치 도입·폐기시 신고 및 제조·수입·판매시 인가 절차 규정을 신설하고, 전파차단장치의 신고와 인가에 관한 사항은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하며, 인가에 관한 사항 중 기술적 심사기준과 평가에 관한 사항은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위임하도록 함

나. 무선국 전자파강도 보고시기 개선(안 제66조제2항·제3항 신설)

무선국 전자파강도 보고 시기(준공검사 후 45일 이내) 계산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를 준용,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불가피한 상황 발생 시 보고시기 연장을 신청, 승인할 수 있는 근거 신설

다. 단순 오류 정정(안 제54조제2항)

방송국의 개설허가 신청 내용 중 “제24조제3항제2항”을 “제24조제3항제2호”로 변경하고, “내에개설하는”을 “내에 개설하는”으로 변경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전파차단장치 제조 등의 신고 및 인가) ① 법 제29조 제4항에 따라 전파차단장치를 도입 또는 폐기하는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은 도입 또는 폐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전파차단장치의 종류 및 명칭(장치 일련번호 포함)
2. 수량
3. 도입 또는 폐기시기

② 법 제29조 제5항에 따라 전파차단장치의 제조·수입·판매에 관한 인가(이하 "전파차단장치인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인가신청목적, 그 장치의 제원 및 성능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전파차단장치 인가신청서와 해당 전파차단장치 계통도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인가신청서를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를 심사하여 그 목적이 타당하고 전파차단 대상 주파수와 주파수허용편차 등 송신설비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규격의 적정성이 인정되는 경우

에 한하여 인가의 유효기간을 정하여 인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인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인가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연구기관 등과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23조제1항제1의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8. 법 제29조 제7항 전파차단장치 인가에 관한 사항 중 인가의 기술적 심사기준과 평가에 관한 사항

제123조제2항제7의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법 제29조 제7항 전파차단장치 신고와 인가에 관한 사항(인가의 기술적 심사기준과 평가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66조제2항,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66조 제1항의 전자파 강도 보고시기의 계산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를 준용하며 시설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보고시기를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의 보고시기가 끝나기 전에 연장사유, 보고 예정일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고시기의 연장사유가 합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제54조제2항 중 “제24조제3항제2항”를 “제24조제3항제2호”로 하고, “내에 개설하는”을 “내에 개설하는”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3조 및 제123조 제1항 제1의8호·제2항 제7의2호의 개정 규정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53조(전파차단장치 제조 등의 신고 및 인가)</u> <u>①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전파차단장치를 도입 또는 폐기하는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은 도입 또는 폐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u> <u>1. 전파차단장치의 종류 및 명칭(장치 일련번호 포함)</u> <u>2. 수량</u> <u>3. 도입 또는 폐기시기</u> <u>② 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전파차단장치의 제조·수입·판매에 관한 인가(이하 "전파차단장치인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인가신청목적, 그 장치의 제원 및 성능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전파차단장치 인가신청서와 해당 전파차단장치 계통도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u>③ 제2항에 따른 인가신청서를</u>

제123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
의 권한을 국립전파연구원장에
게 위임한다.

1. ~ 1의7. (생략)

<신설>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은 이를 심사하여 그 목적이 타
당하고 전파차단 대상 주파수와
주파수허용편차 등 송신설비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규격의 적정
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가의 유효기간을 정하여 인가
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인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
를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를 신
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인가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
관, 연구기관 등과 협의체를 구
성·운영할 수 있다.

제123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현행과 같음)

1. ~ 1의7. (현행과 같음)

1의8. 법 제29조제7항 전파차단
장치 인가에 관한 사항 중 인가
의 기술적 심사기준과 평가에
관한 사항

2. ~ 19. (생략)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
에게 위임한다.

1. ~ 7. (생략)

<신설>

8. ~ 28. (생략)

제66조(전자파 강도의 보고 시기
및 방법) ① (생략)

<신설>

<신설>

2. ~ 19.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 7. (현행과 같음)

7의2. 법 제29조제7항 전파차단
장치 신고와 인가에 관한 사항
(인가의 기술적 심사기준과 평
가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8. ~ 28. (현행과 같음)

제66조(전자파 강도의 보고 시기
및 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제66조제1항의 전자파 강도
보고시기의 계산은 「민원 처리
에 관한 법률」 제19조를 준용
하며 시설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보고시기를 연장하려는 경우에
는 제1항의 보고시기가 끝나기
전에 연장사유, 보고 예정일 등
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고시기의 연장
사유가 합당하다고 인정하는 경

제54조(방송국의 개설허가 신청) ① (생략) ② 방송국의 개설허가신청 시 지상파방송보조국(<u>제24조제3항제2항</u>에 따른 지하·터널 <u>내에</u> <u>개설하는</u> 지상파방송 보조국은 제외한다)을 둘 이상 동시에 허가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무선국의 수에 관계없이 허가신청서 1부와 무선설비의 시설개요서 및 고사설계서 각 1부만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방송국별로 설치장소·안테나형식 또는 안테나공급전력 등이 일부 다를 때에는 그 명세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u><신설></u>	<u>우에는 이를 승인할 수 있다.</u> 제54조(방송국의 개설허가 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 ----- <u>제24조제3항제2호</u> ----- <u>내에</u> <u>개설하는</u> ----- ----- ----- ----- ----- ----- ----- ----- -----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3조 및 제123조제1항제1의8호·제2항제7의2호의 개정 규정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